

일반의안 검토보고서



총무위원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목 차

-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[재 무 과] 1
-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[재 무 과] 5

2024년 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4. 5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4. 5.

2.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

1] 거창법조타운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

1. 제안이유

-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시 현대아파트 등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센티브 추진 사업
- 법조타운과 인근 공동주택과 초·중·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예상 및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
- 주차공간 공급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증가 및 교통복지 실현

2. 주요내용

가. 취득개요

- 위 치: 거창읍 가지리 일원
- 사 업 명: 거창법조타운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
- 사업기간: 2024. 1. ~ 2025. 12. (2년)

- 총사업비: 45억원(전환도비 20, 군비 20, 특교5)
 - 2024년도 예산 : 25억원(전환도비 10, 군비 10, 특교 5)
- 사업규모: 7,850㎡(2,300평) 정도
 - 부지매입: 6,848㎡(2,071평) 정도 / 【취득재산 불임】
- 사업내용: 공영주차장 조성 1식(주차면수 190면 정도)

나. 취득재산 세부내역 : 16필지, 6,848㎡(2,071평) / 【불임1】 참조
다. 추진경과

- 2015. 11.: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착공
- 2019. 10.: 주민투표 / 투표율 52.8%, 찬성 64.7%, 공사 재착수
- 2020. 5.: 인센티브 확보 공동대응 범조타운 조성 민·관
협의회 구성
- 2020. 7.: 법무부 교정본부 방문 주민편의시설 조성 인센티브 건의
- 2021. 4.: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계획 수립
- 2022. 3.: 2022년 1차 특별교부세 30억원 신청(5억 교부결정)
- 2022. 8.: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방문 예산 건의
- 2022. 9.: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건의
- 2022. 10.: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신청 국회의원실 방문
- 2023. 1.: 거창구치소 준공
- 2023. 1.: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 거창군 내방 시 재정 건의
- 2023. 6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전환도비 신청
- 2023. 7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 현장평가
- 2023. 10.: 한동훈 법무부장관 구치소 개청식 참석 시 재정 건의
- 2023. 11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전환도비 10억원 확정내시
- 2023. 11.: 김태호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20억원 재정 건의
- 2023. 11.: 경남도 행정부지사 방문 특별교부세 20억원 재정 건의
- 2023. 12.: 행정안전부 방문 갈등해결 인센티브 20억원 재정 건의

- 2024. 1.: 법조타운 인근 업무추진 관련부서 대책회의(군수님 주재)
- 2024. 2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전환도비 교부

라. 향후계획

- 2024. 4.: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(20억원) 편성
- 2024. 4.: 문화재 영향검토,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용역 추진
- 2025. 1.: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

마. 기대효과

- 주택가 주민들의 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
- 주차공간 신규 공급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증가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

4. 위치도 및 현황사진 : 붙임2 참조

3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거창법조타운 인근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르면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
- 본 사업을 위해 취득하려는 토지는 거창읍 가지리 일원 16필지, 6,848㎡로, 기준가격은 4억 2천여만원이나,
- 주변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거창읍 상림리 402-3번지가 21.1만원/㎡에 거래되었으며, 2022년 4월에는 주차장 토지인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가 77.6만원/㎡에 거래된 사례로 미루어 보아 실제 매입금액은 기준가격대비 최소 4~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- 부지 매입 후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190면 정도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
※ 총사업비 45억원(전환도비 20, 군비 20, 특별교부세 5)
- 해당 토지 주변은 공동주택과 초·중·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해 10월 거창구치소 개청과 함께 거창보호관찰소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올 연말에는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부지조성이 완료될 계획임.
- 또한, 최근 912세대의 신규 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향후 유동 인구 증가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주차 공간을 공급하여 주택가 주민들의 이면도로 불법 주·정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재 산 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4. 5.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다. 회부일자: 2024. 4. 5.

2. 제안이유

-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‘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’으로 추가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고시지역: 2024. 1. 10. 현재 관내 도시지역으로결정·고시된 지역
나. 대상면적: 32.21km²
다.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

읍면동	면적(m ²)	적 용 대 상 지 역
합 계	32,210,186	거창읍·웅양면·마리면·남상면·가조면 일부지역
거창읍	26,767,975	상림리·중앙리·대동리·대평리·김천리·송정리·장팔리·정장리·동변리·서변리·가지리·양평리·학리 일부지역
웅양면	2,773,000	죽림리·동호리·산포리·노현리 일부지역
마리면	455,000	하고리 일부지역
남상면	1,320,476	대산리·월평리 일부지역
가조면	893,735	대초리·일부리·마상리·수월리 일부지역

라. 고시면적 변경 내역

(단위 : m²)

금회 고시면적 (2024. 1. 10. 기준)	기 고시면적 (거창군고시 제2019-42호)	증가면적
32,210,186	31,906,464	(증) 303,722

마. 고시면적 변경 사유

- 남상면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(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 → 일반공업지역)

4. 관련법규

- 지방세법 제112조,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‘도시 계획구역’에 부과되며, 우리군은 거창읍과 4개 면지역 31.91km²가 도시지역으로 결정·고시되어 있었으나
-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인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내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0.3km²가 추가되어 2024. 1. 10.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32.21km²가 됨.
 - ※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[경상남도 고시 제2022-689호]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와 「거창군 군세 조례」 제13조에 근거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의 기반시설의 신설,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0.14% 세율로 적용되고 있음.
- 도로, 상하수도 등의 설비, 공원이나 녹지 등 도시지역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시설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 시 도시지역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